

의안번호	2219286
의 퇴 인	허영의원
회 답 일	2026. 6. 29.
추계번호	26C2968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·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,000만원, 2031년 7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5,000만원(연평균 7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정보통신망 이용 결혼중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(안 제12조의2)	70	70	70	70	70	350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의2(정보통신망 표시·광고 모니터링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·광고가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(제1항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의2(정보통신망 표시·광고 모니터링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·광고가 제12조¹⁾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, 관련 사업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로 매년 7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성평등가족부는 국제결혼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, 2025년도에 해당 사업 실시를 위해 6,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1) 제12조(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의 금지 등)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·과장되거나 국가·인종·성별·연령·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·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·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,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제1항에 따른 거짓·과장된 표시·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표 2]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인터넷 이용 결혼중개 표시·광고 모니터링 (안 제12조의2)	70	70	70	70	7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